#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과세특례적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과세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식을 1년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 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993, 2021,09,16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직 중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산정방법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국조-1221, 2021.09.17

### ▮질 의

- 내국법인(갑법인)은 00항만공사와 인천항의 남항 제1 항로 정비 준설작업 및 북항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해당 정비 준설작업을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인 (신청법인)과 계약을 체결( 21.6.8.)
  - 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준설 작업에 필요한 자항식 호퍼 준설선 등(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이하 '준설선')을 제공 받는 대가와 준설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질의

- (질의1) 신청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 상업 적 또는 학술적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 가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 ▮회 신

-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2022 · 03 · 23 www.eAnSe.com 13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 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 니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 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 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 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 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 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708, 2021.09.26

#### ▮질 의

•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 부

#### ▮회 신

'상속세 및 중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 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 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한한다)에 대해서는 중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 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 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103, 2021.09.30

#### ▮질 의

-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 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 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 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 자금액
  -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 (을설)계약금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 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